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광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